
- 2018년 사업소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 척 시
[기획감사실]

2018년 사업소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7건	주의 15 시정 12		* ,***,***	
1	○○○○○○ (●●●●●)	2016~ 20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	○○○○○○ (●●●●●)	2017~ 201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 (●●●●●)	2018	인건비 지급 부적정	주의			
4	○○○○○○ (●●●●●)	2017~ 2018	일상감사 요청 미이행	주의			
5	○○○○○○ (●●●●●)	2017	입찰공고기간 적용 부적정	주의			
6	○○○○○○ (●●●●●)	2017~ 2018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의			
7	○○○○○○ (●●●●●)	2017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 *,***	
8	○○○○○○ (◇◇◇◇◇)	2017~ 20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9	○○○○○○ (◇◇◇◇◇)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 ,***	
10	□□□ (■■■■■■)	2017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주의			
11	□□□ (■■■■■■)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 ,***	
12	□□□ (■■■■■■)	2016~ 2018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 ,***,***	

연번	소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비고
					내역	금액(원)	
13	○○○○○○○	2016~ 2018	시설공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14	○○○○○○○	2016~ 20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5	○○○○○○○	201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6	○○○○○○○	2017~ 2018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	
17	○○○○○○○	2016~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	
18	○○○○○○○	2016~ 2018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	
19	○○○○○○○	2017	폐기물처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	
20	○○○○○○○	2016~ 2018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21	●●●●●●●	2016~ 20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2	●●●●●●●	2017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	
23	●●●●●●●	2017~ 2018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24	●●●●●●●	2017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	
25	●●●●●●●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 ,***,***	
26	●●●●●●●	2016~ 2018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	
27	●●●●●●●	2017~ 2018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12건			* ,***,***		
2016.**.**	***** *** **** 보완공사			* ,***,000	공공운영비	시설비
2016.**.**	*** 사업관리 및 성과보고회 전시물품 구입	20	접아식 테이블	* ,***,000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7.**.**	***** ** 업무추진 지원관련 관계관 간담회			***,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or시책 업무추진비
2017.**.**	우편엽서 발송에 따른 우표 구입			***,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7.**.**	***** 외부목재 도장공사	1식		** ,***,***	공공운영비	시설비
2017.**.~**.	4~8월분 일반전화 요금	5개월		*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7.**.**	청사내 화장실 정비 소모품		청소용품	***,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7.**.**	****(****) 환경관리용 소모품 구입		커피	***,***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정적 지출과목
2017.**.**	**, ** ***** 전기설비공사	1식		*,***,000	공공운영비	시설비
2018.**.~**.	***** *****대행 수수료	8개월		*,***,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8.**.**	** *****(**) **** 검정수수료 지출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8.**.**	업무용 차량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충전료			***,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 내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로 구분하고,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잡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 등의 구입비,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구분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항목에

따르면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따르면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을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적용을 잘못하여 예산편성 목적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함으로써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연도	건수	금액	비고
2017년~2018년	12건	* , ***천원	격려금 지급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 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

하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따르면, 제2조제1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별표1] 각 항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집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농어촌일손돕기 등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이 가능하고, 봉사활동 범위는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일일찻집, 바자회 등 간접적인 봉사활동은 집행 불가)을 하는 경우이며, 봉사활동에 대한 발대식, 봉사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 등의 행사까지 확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격려금은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 대회, ●○●●●, ●●●● 대잔치, ●●●● 대회 등 격려금 지급을 위한 직무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특산품 제공, 기념품 증정, 관계자 식사 등)
3.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체육선수, 공연 현장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군부대, 소방, 경찰, 우체국 등 현업근무자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위로금품,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내방객 제공 다과구입, 축의·부의금품 등)

동 범위라고 볼 수 없고 ◀◀ 관련자들의 단순 행사 참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건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인건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사업명	사역기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
계	10건			***,***,***	
2018.01.31	1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1.02.~01.31.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02.28	2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2.01.~02.28.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03.30	3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3.01.~03.31.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04.30	4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4.01.~04.30.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05.31	5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5.01.~05.31.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06.29	6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6.01.~06.30.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07.31	7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7.01.~07.31.	**명	**,***,***	집행품의 생략

지출일자	사업명	사역기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
2018.08.31	8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8.01.~ 08.31.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09.28	9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09.01.~ 09.30.	**명	**,***,***	집행품의 생략
2018.10.31	10월 ***** 및 *****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2018.10.01.~ 10.31.	**명	**,***,***	집행품의 생략

2. 내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기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일용인부 일시사역을 실시하면서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 내용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집행 품의 생략대상이 아님에도 월초 사역결의만 시행하고 사역기간 종료 후 별도의 예산집행 품의 없이 인건비를 지출하여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향후, 인건비 집행 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 후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일상감사 요청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일상감사 요청 미이행 현황

시행일자	적요	추정금액(천원)	분류
계	3건	***,100	
2017.**.**	***** * *** *** 시범사업	***,000	보조금
2017.**.**	*****(* ****) *** 지원사업	***,100	보조금
2018.**.**	*** *** ***(* **** *) 지원	***,000	보조금

2. 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

상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및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 전문·기타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³⁾인 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사업,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 사업, 5천만원 이상 전용·예비비 집행·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업무로 교부 결정금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 시범사업’ 등 3건 ***,*00천원의 보조금 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부 결정금액 1억원 이상으로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사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 일상감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3)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전문·기타 2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누적 증액분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입찰공고기간 적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공고명	추정가격	공고일	공고기간	개찰일	공고일수	비고
*** * * * * ** 구입	**,***	'17.03.03	'17.03.04~03.07	'17.03.08	2일	소액수의 (3일)
*** * * * * * * * * 구입 및 설치	**,***	'17.03.06	'17.03.07~03.08	'17.03.09	2일	소액수의 (3일)

2.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

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⁴⁾ 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⁵⁾ 전 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재공고입찰의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건의 소액수의계약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공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2일만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일 +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 개찰일(입찰서제출마감일)

5) 공고일 + 1일 2일 3일 4일 5일 + 개찰일 (재공고, 조기집행, 긴급행사, 재해복구 등)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황

연도	건수	신용카드 미사용	단체별 구입	대표자 일괄지급
2017년~2018년	23건	1	1	21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용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

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⁶⁾하고,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다과 구입 등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대상임에도 다과 구입 시 계좌이체로 집행하였고, ♠♠♠ 단체복 구입 지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단체복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이 원칙임에도 인원수가 많음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였고 집행품의서에 산출내역과 총 지급금액만 기재하고 상세명단은 작성하지 않아 참석자 여비를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는 등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6)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 12. 27. 시행 (이전에는 현금지급하고 영수증 징구)

【처분요구】

- 「지방회계법」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원

【제 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환경관리비 미정산 현황

지출일자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구분	미정산 금액(원)	비고
2017.**.**	*** **** ***** 교체공사	(주)****	**,***	환경관리비	**,***	증빙없음

2.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교체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하나,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정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적정지출과목
계	4건			* ,***,***		
2017.**.**	***** ***** 덮개 수선공사	1식		* ,***,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7.**.**	2017년 제*회 *** ****, ** 경진대회 참석		등록비	** ,000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2018.**.**	***** **** 구입	40		* ,***,000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8.**.~**.	***** 결제대행 수수료	9개월		*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 내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페복비, 임차료로 구분하고,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구분하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항목에 따르면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따르면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을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적용을 잘못하여 예산편성 목적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함으로써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요	채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2017.**.**	** 임차(***)	** *****	*,**	**	**	*

2.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

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건 *,***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천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연도	건수	인원	내역	비고
2017년	10건	10명	출장 입증서류 미첨부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⁷⁾ 1점 이상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도 ▲▲▲▲▲ 설명회 참석’ 등 10건에 대한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출장공무원에게 출장복명서 또는 숙박을 하였을 경우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등 여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향후, 국내여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2017.**,**	***** ** **(**) 교체 등 보수공사	** *****	*,***	**	**	*

2.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건 *,***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천원을 미소화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황

기준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고
계		*,***,***	
2018.11.13.	4140-****-****-****	***,***	BC TOP
	9410-****-****-****	*,***,***	유류카드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6. 11월부터 2018. 11. 13.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원(BC TOP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설공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체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도급업체	건설업종
계	5건		**,***		
**** ***** *** 설치 공사	'16.**.**	'16.**.** ~**.**	**,***	*** ****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 ** 조성 공사	'17.**.**	'17.**.** ~**.**	**,***	(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 ** ***** 보강공사	'18.**.**	'18.**.** ~**.**	**,***	**	습식·방수공사업
***** *** 보수공사	'18.**.**	'18.**.** ~**.**	**,***	****	기계설비공사업
***** *** 보수 및 이전공사	'18.**.**	'18.**.** ~**.**	**,***	*****	시설물유지관리업

2. 내용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 공사등)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공사예정 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 ◎◎ ◇◇ ♦♦♦ □□□□ \$\$\$ 시설공사’ 등 5건 **,***천원을 시행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 업종을 보유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에도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건설업을 등록한 적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정지출과목
계	14건			* ,***,***		
2016.**.**	*** ** 구입			***,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6.**.** 2018.**.**	***** ** 및 ** 등 구입	26건	**, * 등	* ,***,***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2017.**.**	***** ** *** 물품 구입	1식	**, * 등	***,***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2017.**.**	*** *** 구입	5		***,000	시설비	사무관리비
2017.**.**	*** *** 및 **** 구입	1식		***,*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7.**.**	청사 내 **** 및 *** 구입			***,*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7.*.~**.	등기우편 수수료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8.**.**	*** 및 *** ** 구입			* ,***,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8.**.**	사무용품 구입	2	제본기	***,000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정적 지출과목
2018.**.**	*** ** 및 **** 구입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8.**.**	***** ** 보수물품 구입			***,*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8.**.**	*** ** 보관용 ** 및 *** 구입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8.**.**	2018년 **** **** 현수막 구입			***,000	시험연구비	사무관리비
2018.**.**	관용차량 하이패스 요금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 내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로 구분하고,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 등의 구입비,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구분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⁸⁾에게 지급하는 식비(특근매식비 단가 적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적용을 잘못하여 예산편성 목적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함으로써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비고
계	3건		***,***	
201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및 **행사	**,000	영화 관람
201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대회	***,000	기준액 초과 (1인당 **천원 계상)
201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회식	***,*00	내부공무원 집행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업무추진비 항목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

한 경비로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나 과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3건 ***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부서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는 영화관람료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인당 집행금액이 3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1인당 **천원으로 계상하여 품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내부직원 회식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계	9건		***,***,***	***,***
2017.**.**	**** ***** *** 구입	****	**,***,000	**,***
2017.**.**	**** ** 구입	(주)*****	**,***,000	**,***
2017.**.**	***** *** 건립(통신)	(주)****	**,***,***	**,***
2017.**.**	** **** *** ** 구입(**)	****	**,***,000	**,***
2017.**.**	**** *** ** 구입	***** (주)**	**,***,000	**,***
2017.**.**	**** *** ** 구입	****	**,***,000	**,***
2017.**.**	**** *** ** 구입	***** (주)**	**,***,000	**,***
2018.**.**	**** ***** ** 구입	****	**,***,000	**,***
2018.**.**	**** *** **구입	****	**,***,000	**,***

2. 내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 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9건 ***,**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9건		**,***			미소화 ***
2016.**.**	***** 철거 및 **** 장비임차	*****	*,***	**	**	*
2016.**.**	**** ** 구입	*****	**,***	-	***	***
2017.**.**	**** *** ** 및 ** 위탁용역	*****	*,***	***	***	**
2017.**.**	2017년 ***** (1회추경) ** ** 구입	*****	**,***	***	***	*
2017.**.**	*** ***(**) 제작 구입	*****	*,***	**	**	*
2017.**.**	***** *** 임차	***(주)	*,***	-	**	**
2017.**.**	***** 및 * *** *** 구입	*****	*,***	-	**	**
2018.**.**	2018년 **** *** 임차	***** (주)	*,***	-	**	**
2018.**.**	***** ***** 시설 **** 건립관련 통신공사	(주)*** *****	**,***	***	***	**

2.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제4항 [별표 2]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9건 **,***천원을 집행하면서 자산취득비 비목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지역개발채권 ***천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황

기준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고
계		***,***	
	5585-****-****-****	**,***	BC TOP
2018.11.19.	9430-****-****-****	***,***	유류카드 (***)
	9430-****-****-****	**,***	유류카드 (****)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

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6. 11월부터 2018. 11. 19. 감사일 현재 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원(BC TOP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원

【제 목】 폐기물처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폐기물처리비 정산 부적정 내역

지출일자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원)	비고
2017.**.**	***** 주변 **** 교체 공사	(주)*****	**,***	폐기물 처리비	***,***	정산 부적정 (처리톤수 부족)

2.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교체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폐기물 처리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물량보다 적게 처리했음에도 정산 없이 대가를 전부 지급하여 준공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한 폐기물처리비 ***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연도	계	계약서 미작성	서식 사용 부적정	검수조서 누락
2016년~2018년	43건	4	28	11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 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결의서)]이나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

지 제45호서식(일반)]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구입’ 등 44건 ***백만 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지출결의서(이면 승낙사항 포함)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공사·용역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 주문·납품·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 러하지 아니하고 회계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 36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내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로 구분하고,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 등의 구입비,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구분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료비(206)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항목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36건 **,**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 적용을 잘못하여 예산편성 목적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함으로써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계	10건		***,***,***	***,***
2017.02.06	***** *** **** 임차(1월)	****	**,***,***	**,***
2017.03.06	***** *** **** 임차(2월)	****	**,***,***	**,***
2017.04.05	***** *** **** 임차(3월)	****	**,***,***	**,***
2017.05.10	***** *** **** 임차(4월)	****	**,***,***	**,***
2017.06.08	***** *** **** 임차(5월)	****	**,***,***	**,***
2017.06.19	***** ** *** ** 교체공사	***	**,***,***	**,***
2017.07.06	***** *** **** 임차(6월)	****	**,***,***	**,***
2017.08.10	***** *** **** 임차(7월)	****	**,***,***	**,***
2017.09.08	***** *** **** 임차(8월)	****	**,***,***	**,***
2017.09.29	***** *** *** **	*****	**,***,***	**,***

2. 내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원’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0건 ***,* 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입찰공고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공고명	추정가격	공고일	공고기간	개찰일	공고일수	비고
***** * ***** 공사	**,***	'17.02.27	'17.02.28~03.02	'17.03.03	2일	소액수의 (3일)
***** *** **** **** 용역(단가계약)	**,***	'17.10.20	'17.10.21~10.22	'17.10.23	2일	긴급 (5일)
***** * ***** 증축공사(건축)	***,***	'17.11.14	'17.11.15~11.20	'17.11.21	6일	일반 (7일)
***** *** **** **** 용역(단가계약)	***,***	'18.01.15	'18.01.16~01.18	'18.01.19	3일	긴급 (5일)

2.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⁹⁾ 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¹⁰⁾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재공고입찰의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건의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입찰공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고일 +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 개찰일(입찰서제출마감일)

10) 공고일 + 1일 2일 3일 4일 5일 + 개찰일 (재공고, 조기집행, 긴급행사, 재해복구 등)

【일련번호 : 2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2.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건 **,**천원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등 제반비용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하나,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정산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등 **,**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10건		***,***			미소화 *,***
2017.**.**	***** *** *** *** 구입	***** (***)	* ,***	-	**	**
2017.**.**	***** ** **** (공구) 구입	*****	* ,***	-	***	***
2017.**.**	***** *** ***** 교체공사	*****	* ,***	**	**	**
2017.**.**	***** ** *** ** 교체공사	***	** ,***	***	***	***
2017.**.**	***** *** 및 ***** 이전설치공사	(주)****	* ,***	-	**	**
2017.**.**	***** ***** ***** *** 설치공사	*****	** ,***	***	***	***
2017.**.**	*** *** 구입	*****	* ,***	-	**	**
2017.**.**	***** ** ***** *** 이전,교체 설치공사	(주)*** *****	** ,***	***	* ,***	***
2017.**.**	*** *** 구입	*****	* ,***	**	**	**
2017.**.**	***** *** *** 세탁	*****	** ,***	***	***	***

2.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제4항 [별표 2]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0건 ***,***천원을 집행하면서 재료비 비목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여 공채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지역개발채권 *,***천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황

기준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고
계		***,***	
2018.11.30.	4140-****-****-****	***,***	BC TOP
	4140-****-****-****		
	4140-****-****-****		
	4140-****-****-****		
	9430-****-****-****	***,***	유류카드
	9430-****-****-****	***,***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6. 11월부터 2018. 11. 30. 감사일 현재 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원(BC TOP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연도	계	이면 승낙사항 미작성	서식 사용 부적정	검수조서 누락
2017년~2018년	12건	1	8	3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 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결의서)]이나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

지 제45호서식(일반)]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공사' 등 12건 **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지출결의서(이면 승낙사항 포함)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공사·용역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주문·납품·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계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